

연세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

[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안내]

1. 현장실습지원비란?

가. 현장실습지원비(이하, 실습지원비)는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.

-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도 가능합니다. 단,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본 안내문에서는 최저임금액으로 기준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.

나. 실습지원비의 산정

1) 전체 실습시간 중 교육시간 비율을 반영해 산정됩니다.

- 교육시간 비율: 전체 실습시간의 10%~25% 사이로 설정(의무사항)

• 실습지원비 산정식(시간당): '최저임금액' x '100%-교육시간비율'

예) 교육시간비율 25%인 경우: '2023년 최저임금액 9,620원' x '75%'

- 교육시간 증빙은 학생 보고서로 대체합니다.

2) 실습지원비 최소 지급액: 최저임금의 75%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.

예) 75% 지급일 경우, 2023년 여름 계절학기 총 지급액

$$9,620\text{원} \times \text{주 } 48\text{시간} \times 8\text{주} \times 0.75 = 2,770,560\text{원}(\text{주휴수당 포함})$$

3) 연장실습의 실습지원비

- 주 40시간 초과 연장실습인 경우, 교육시간비율을 반영해 감액하지 않습니다.

• 지급액 산정식: 최저임금액 x 1.5(50% 가산) x 실습시간

• 연장실습은 지양해 주시고, 학생의 동의 하에 1주 최대 5시간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.

다. 지급 방식: 월/주 기준으로 당월/익월 정기지급을 권장합니다.

라. 기업 신청서에 학생에게 지급할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, 해당 금액은 실습 중 누락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

마. **실습지원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경비 처리를 진행하며, 어떠한 명목의 세금도 떼지 않아야 합니다.**

- 첨부 교육부 공문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(2022.2.7.)' 참조
(문의: 국세청(126)-2번-4번)

2. [선택사항] 정부재정지원사업비 지급 기준

가. 정부재정지원사업비란,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교육시간에 따른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% 이상에 해당하는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경우, 실습생 1명 당 '최저임금액 25%'(고정)의 금액을 실습기관에 환급하는 제도입니다.

[정부재정지원사업비 지급 처리 프로세스]

① 실습기관→학생에게 최저임금액 100% 이상 지급

- 6. 26.(월)~8. 18.(금), 총 8주

[2023년 최저임금액 9,620원 x 실습시간(주휴포함 주 48시간) x 8주]=3,694,080원

* 연장실습비는 포함하지 않음

☞ 위와 같이 실습기관이 **교육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100% 이상** 지급한 경우

② 학교→실습기관에 최저임금액의 25% 환급(정부재정사업비 재원)

- 실습생 1명 당 총 3,694,080원을 지급한 실습기관에 923,520원(25%) 환급
- 학생 통장 입금액이 총 3,694,080원 이상임을 확인 후 환급 처리

예) 2명의 학생에게 최저임금 100% 이상 지급 시, 환급액 계산:

$$923,520원 \times 2명 = 1,847,040원$$

나. 정부재정지원사업비 신청: 학생 선발 후 학교의 추후 안내에 따라 신청

- 기한 내 요청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만 지급됩니다.
- 기한 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으니,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(지도감독) 5항 3호, 4호 참조」

※ 기타: 교육부 중요 지침 사항

가. 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. 따라서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며,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.

나. 「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」(학교-학생-실습기관, 3자 협약)

작성·체결이 기본 요건입니다. 해당 협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.

(단,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가를 위해 반드시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)